



② “갑”은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을”이 특별한 사유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갑”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을”에게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갑”에 귀속하는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③ “갑”은 계약의 의무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을”에게 반환한다.

제7조(납품) ① “을”은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갑”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 “갑”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8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갑”이 제시한 견본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제9조(검사) ① “을”은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나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의 참여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갑”은 제2항의 검사에서 “을”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을”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을”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갑”은 제13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⑤ “을”은 제2항에 따른 검사에 참여·협력하여야 한다. “을”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을”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⑦ “갑”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보증) ① “을”은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갑”은 납품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다른 점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을”은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을”이 “갑”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갑”이 통지를 한 후, 정해진 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을”은 해당 물품대를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의1(하자보수) ① “을”은 계약 체결 후 무상유지보수 기간(제품검수가 완료된 날부터 1년간 또는 “을”이 제안서에 제안한 기간)동안 “갑”의 유지보수 요

청시 3일내 방문하여 납품 완료한 제품에 하자 또는 결함발생 즉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유지보수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체결시 ①항의 무상유지보수 기간에 대하여 하자보수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대가의 지급) ①“을”은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9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을”과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대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12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갑”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11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9조제2항단서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서 제외한다.

제13조(지체상금) ①“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까지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갑”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갑”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갑”은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까지 제7조제1항에 따라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9조에 따른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9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갑”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갑”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지체상금을 “을”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4조(계약기간의 연장) ①“을”은 제13조제3항 각 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갑”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②“갑”은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갑”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갑”은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을”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서에 정한 계약보증금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서에 정한 계약보증금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을”은 계약기간 연장 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을”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을”이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을”이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을”의 귀책사유(영업정지, 부도, 회생절차 착수 등 포함)로 인하여 납품기 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액에 달한 경우
4.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갑”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

에는 해당 부분에 상응하는 대가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을”은 계약상 기한까지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갑”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갑”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갑”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기납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을”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제17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갑”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따라 “을”이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문서로써 그 사용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을”은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8조(분쟁의 해결) ①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갑”의 소재지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쟁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않된다.